

협력사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주)이테크시스템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주)이테크시스템(이하, '회사'라 함)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과징금 감경사유로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용어의 정의

- ① 상품공급업체 : 회사의 기술지원 서비스업무에 참여하여 Network설치를 위한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 ② 용역서비스공급업체 : 회사의 기술지원 서비스업무에 참여하여 Network설치 업무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 ③ 협력업체 : 상품공급업체와 용역서비스공급업체를 총칭한다.
- ④ 협력업체 선정 :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협력업체 운용 :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2.1 협력업체 선정기준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회사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협력업체 등록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이상 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 당사가 요구하는 유효한 품질인증서(TL9000, ISO9001)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품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실사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2 협력업체의 선정(등록/갱신) 절차 및 결과 공개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결과 공개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심사 개시 30일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②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공개한다.
- ③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 ④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 ⑤ 협력업체 선정일(등록심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⑥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3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협력사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2.4 협력사의 등록 취소 기준

협력업체의 등록 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① 협력업체 자격심사 불합격 업체
- ② 자격심사 서류 허위 제출 업체
- ③ 공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심각한 품질문제 제기업체, 부도발생 등)
- ④ 당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업체
- ⑤ 계약 중도 해제 또는 정산업체
- ⑥ 업체간 담합하여 품질저하 및 단가를 조정한 업체

나.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 없음

다.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협력업체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지된 업체를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 신규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준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회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하고 이의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